對 外 秘

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

대한민국법원

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

2016. 4.

법 원 행 정 처

〈 요 약 〉

1. 검토 배경

가.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

▣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⇨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

▣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

나.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

▣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 ⇨ 전문분야연구회 취지에 반하는 활동, 편법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 표출

다. 종합대책 마련 필요 ⇨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사법부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증진 기여방안

2. 연혁 및 현황 분석

▣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⇨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

▣ 예산 현황 ⇨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

▣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: 2012. 기조실의 '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' ⇨ 시행되지 아니함

● 설립허가규정 폐지,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, 상시 예산 지원 등

▣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

●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,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(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)

3.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

▣ 1 **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**

- **의료법·언론법·기업법** 등 회원수 감소·정체, 참여 저조 ⇨ **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** 유도할 **새로운 전문분야 발굴** 필요

▣ 2 **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**

- **공정한 예산지원 등의 필요성**에 따라 정한 원칙임. 하지만 **사실상**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**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**되고 있음
- **국제인권법연구회**가 **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(227명),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(53%)** ⇨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

▣ 3 **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**

- **[현행배정방식]** 예산의 50%만 **활동성과 순위**에 따라 **배정**
- **[한계①] 1억원을 15개 연구회에 배분**하는 결과 **최대**지원 **1천만원, 최소**지원 **450만원**으로 연구회 활동의 **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**
- **[한계②]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**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
-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**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**

▣ 4 **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**

- **[사법부 전체]**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+ 지식광장에는 미게시
- **[연구회 회원]**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⇨ 재판실무 활용 등 **기여도 높지 않고,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**

▣ 5 **학계·재야·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**

-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,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,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

▣ 6 **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·무시**

- [예1]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, **정치적 함의 포함된 주제 및 연사 다수**

- [예2] 인권과 무관한 **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개입** ⇨ 핵심세력이 **2015. 7. 발족한 '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'**을 통하여 **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**

4.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

가. 개선방안 요약 ⇨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

나.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

▣ (법관 사회 관심 소진 ⇨)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
- **[필요성]** 특정 연구회의 **이슈 독점 방지,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**
  -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**인사모와 '이사야'**(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)의 **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** 필요
- **[기본방향] 젊은 법관들의 관심·수요·참여 고려**, '주제' 못지않게 '주체'의 상징성 중요 ⇨ **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**
- **[후보 1]** 사법국제화 연구회
  - ① **외국어·해외사법·국외연수에 관심** 있는 **법관 다수**, ② **'국제'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·포섭**·유인 **가능**, ③ **우호적 분위기 형성**시 **각종 사법행정현안**에 대하여 **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** 역할 **기대**
  - [운영진 후보군] ① 이○○ 고법판사, ② 원○○ 지법부장 등
- **[후보 2]** 가칭 '법원,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' 연구회
  - **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** 관련 쟁점 전반
  - ① **젊은 법관의 관심**, ② **미디어 속 왜곡된** 법관과 사법의 **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** 형성, ③ **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**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

-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

- [운영진 후보군] ① 문○○ 지법부장, ② 전○○ 고법판사 등

▣ (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⇨) 2 중복가입자 정리

● [필요성]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, **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**하고 있음

● ① 법관들 상대 **중복가입자 정리 명분** 있고, ② **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**하며, ③ **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**이며, ④ **사전 준비의 부담 無** 등의 **여러 장점** 있음

● 施行時 **국제인권법(431⇨204), 노동법(295⇨196) 등이 가장 위축**됨

● **중복가입자 정리과정**에서 **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** 위해 **고법부장급 탈퇴 등** 다른 방안과 **동시에 실시** 필요

▣ (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⇨) 3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

●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,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⇨ 증액에 따른 **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**로 **연구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** 가능

● **평가기준 구체화·실질화**하고 각급법원 **전문분야 지원비(6억원)도 활용**

▣ (커뮤니티 폐쇄성 ⇨)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

● '자신들만의 同質感', '이너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' 등 유발 ⇨ **학술성과 공유,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** 필요

● [시행방안] ① 다른 **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**, ② 예산지원에 따른 **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**과 ③ 각종 **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**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

● [기대효과]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**공유 활성화**,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**불만 해소**, ③ 은밀한 논의의 **만족감 내**

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,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

▣ (외부 활동 미흡 ⇨) 5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

- [시행방안 ①]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
- [시행방안 ②]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
- [시행방안 ③]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

▣ (일부 연구회 활동 저조 ⇨) 6 설립허가 취소 방안 : 소극

- 명분 약하고, 득보다 실이 큼

▣ (행정처의 관리 강화 ⇨) 7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: 소극

-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,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

對 外 秘

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방안 검토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가.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

▣ **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간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**

-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,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⇨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
-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

▣ **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**

-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
-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,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

나.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

▣ **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**

- 반면 연구회 취지에 배치되는 활동, 편법적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점 표출 ⇨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

다.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

▣ **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**

- 전문연구 활성화 및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, 외부의 신뢰 강화,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

▣ **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政務的 대응방안 ⇨ 별도 보고**

2. 연혁 및 현황 분석

▣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

- 2000. 7. 「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」(이하 예규) 제정
- **2000. 8.**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**11개 연구회로 시작**

-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

- **2006. 2.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**

- 연구회 설립을 '행정처장의 분야 지정'에서 **'법관들의 자유설립'으로 전환**,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**행정처장이** 일정한 요건 하에 **설립허가**
-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**'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' 신설**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
- **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**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
-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·열람권을 갖는 **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**

- 2006. 11. 헌법연구회 신설 (중복가입 허용)
- 2007. 12. 젠더법 연구회 신설 (중복가입 허용)
- 2010. 7. 형사법연구회 신설 (중복가입 허용)
- 2010. 12. 예규 개정

-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. 1.에서 1. 15.로 변경

- 2011. 8.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⇨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

▣ 예산 현황

- 2016년 예산 편성 ⇨ [210-12 복리후생비]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

-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(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)

-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(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'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' 약 6억 원과 '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'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)

▣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

● 2012. 1. 기조실 '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' ⇨ 시행되지는 아니함

☑ [주요 내용]

▶ **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**

- 행정처장의 **설립허가규정 폐지** (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)
- **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**(회원 자격, 가입 및 탈퇴, 임원진 구성,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)
- **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**

▶ **예산지원 관련 개선**

-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**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** (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,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⇨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'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'에서 상시 지원)
- **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⇨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,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** (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)
-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

▣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

연구회	회장	시샵	회원 수						예산지원현황(평가순위)			
		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4년		2015년	
									순위	배정액	순위	배정액
국제거래법	노○○	홍○○	121	121	152	162	206	221	8	550만원	7	550만원
국제인권법	이○○	김○○	11. 8. 설립		108	217	285	431	4	700만원	4	700만원
기업법	김○○	김○○	180	199	198	197	207	214	15	450만원	13	450만원
노동법	김○○	김○○	155	165	171	179	200	295	8	550만원	10	550만원
도산법	이○○	이○○	264	288	324	364	402	449	5	650만원	7	650만원
민사집행법	김○○	이 ○	560	614	679	726	773	875	2	1천만원	1	1천만원
사법정보화	허○○	박○○	300	336	355	362	380	395	8	550만원	12	550만원
언론법	고○○	남○○	88	94	102	118	127	140	12	500만원	14	500만원
의료법	이○○	노○○	236	236	272	283	294	291	12	500만원	15	500만원
젠더법	민○○	김○○	389	397	433	628	651	691	3	950만원	1	950만원
조세법	김○○	이○○	176	186	213	222	238	257	5	650만원	6	650만원
지적재산권법	이○○	이○○	319	319	340	356	358	374	5	650만원	5	650만원
헌법	장○○	김○○	165	184	199	213	220	269	12	500만원	11	500만원
형사법	임○○	이○○	235	519	825	1,294	1,683	2,041	1	1250만원	3	1250만원
환경법	배○○	이○○	182	188	217	224	236	245	8	550만원	9	550만원
회원총수 및 총지원금			2,699	3,139	3,546	4,588	5,545	6,943		1억원		1억원

※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

※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(법관은 635명)

3.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

▣ 1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

- [의료법연구회]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,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

  -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

  - 서울중앙·서부·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- [언론법연구회]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(세미나)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,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

- [기업법연구회]의 경우 2012,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,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

  - 단, 그 소모임인 법경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

-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(15~13위)를 기록

- 반면 젠더법연구회,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⇨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

▣ 2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

-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,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,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

-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,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

● 중복 가입 현황

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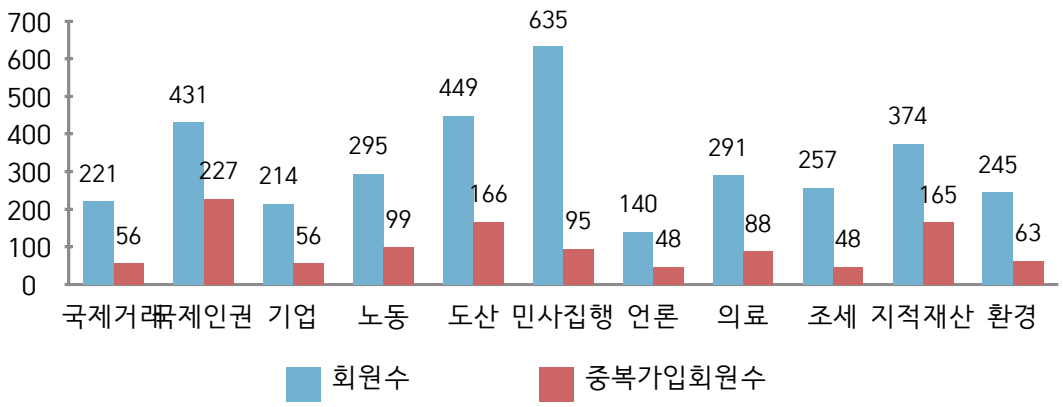

※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(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),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

▣ 3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

● **[현행 예산배정방식]** 연 2회 지원액 배정

- 상반기 배정(예산액 50%)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
-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%는 일률적으로 1/n 배정, 나머지 25%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

● **[한계①]**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

-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**최대지원액 1천만 원**(민사집행법, **875명**), **최소지원액 450만 원**(기업법, **214명**)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 지원의 취지 미약 ⇨ **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**

● **[한계②]**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

- 예산 중 50~55%를 균등액 분할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
- 제한된 예산 중 45~50%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(1~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)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⇨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

● ⇨ **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** 필요

▣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

- **[사법부 전체]**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+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(커뮤니티 외)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아니함
- **[연구회 회원]**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+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
- ⇨ **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** 높지 않고, **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**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

▣ 5 학계,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

-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

- 2014년 미실시 연구회 : 환경법, 도산법, 기업법 (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자치하는 심포지엄 개최)

-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

-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, 나아가 **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**함

- ② 권위있는 **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**을 통해 **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**한 수준임

- ③ **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(정기, 비정기)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** 있음(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)

▣ 6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·무시

-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,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

행사	주제	연사
1월 특강	**경제민주화와 인권**	**정○○ 전 총리**
3월 세미나	건강할 권리	김○○ 교수(서울대 보건대학원)
5월 세미나	**증세와 복지**	**새누리당 김○○ 의원**

6월 법관연수	**인권법과 법관**	**경향신문 이○○ 기자 등 (전○○ 대법관, 김○○ 헌법재판관)**
7월 세미나	**모욕죄의 남용과 한계**	연구회 내 '표현의 자유' 소모임 소속 허○○, 류○○ 판사
8월 세미나	영화 빵과 장미	자유 토론
10월 특강	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	경향신문 구○○ 기자
12월 학술대회	이주노동자의 노동권	한국노동법학회,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

- **'국제인권' 과 무관한 주제**가 대부분 ⇨ 경제민주화와 인권,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
-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**연사로도 전·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**하게 됨

● **인권과 전혀 무관한 '사법제도'에 관한 소모임 운영**

-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. 7. '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' 을 발족하여 **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명분으로 관여 시도**
- 상고법원, 사법행정위원회, 판사회의 활성화,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

4.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

☑ 개선방안 요약 ⇨ <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> 및 <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>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

▶[전반적 문제점1]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⇨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-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

▶[문제점2]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⇨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(규범력 회복)
-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+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

▶[문제점3]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⇨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

▶[문제점4] 커뮤니티 폐쇄성 ⇨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
-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+ 실무전문성 축적

▶[문제점5]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⇨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
-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

▶기타 ⇨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,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

▣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
● 필요성

- 인권의 보편성 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**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**

-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,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, **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**

☑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

▶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⇨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

▶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(부장과의 관계 등) 관련 이슈 ⇨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

▶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⇨ 젠더법커뮤니티

▶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⇨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

⇨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'인사모'와 '이사야'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'매력적인' 커뮤니티 신설 필요

● 발굴의 기본방향

-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**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** ⇨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,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

- 전문분야의 '주제'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'주체'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⇨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,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

● [새로운 연구회 후보 1] 사법국제화 연구회

-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⇨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'각국의 사법행정'도 연구대상으로 확대

-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, 번역 및 조사,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, 해외 소개 및 홍보 ⇨ 현행 **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**하는 형태

- [참가 유인]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**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**하고 있음
⇨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

- [+]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**젊은 법관들 상당수** 참여 가능, ② **국제인권법 회원 중 '국제' 관련 분야에**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, ③ **포괄적인 이슈**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, ④ (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)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,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

- [-]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, ② 사법행정 현안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 ('관제 연구회'),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

- 운영진 후보군

이름	사진	소속	경력
이○○		○○고등법원 고법판사	-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,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,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, 교류능력 있음
원○○		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	-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,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, 젊은 법관들과 소통, 교류 가능함

● **[새로운 연구회 후보 2] 가칭 '법원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 law' 연구회**

- **[주된 분야] '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'**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,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컨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

- [+] 젊은 법관들의 **관심을 쉽게 유도**할 수 있음(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+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,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)

- [+]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, **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** ⇨ **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** 가능

- [+] **주요 영화사·방송사·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**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

- [+] **장기적으로** 미디어를 통해 **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**(ex: 영화 '12 angry men')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

- [-]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'국풍 81', '3S 정책'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

- [-] 컨텐츠의 지속적·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

- **※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**할 수 있음(국제규범연구회,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)

- 운영진 후보군

이름	사진	소속	경력
문○○		○○지법 부장판사	-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**-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**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⇧ -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
전○○		○○고등법원 고법판사	-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,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
오○○		○○고등법원 고법판사	-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

▣ 2 중복가입자 정리

● 필요성

-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⇨ **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**이 **예산지원, 전문자료 접근,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**하므로, 이를 시정할 필요

-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특정 연구회가 크게 누리고 있음 ⇨ **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(중복가입자 정리)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**이 될 수 있음

☑ **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**

▶ 1 **[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]**

-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**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,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**

-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**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**, ② **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**, ③ **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** 등의 명분 있음 ⇨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

▶ 2 **[행정처·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]**

- 수백명 가입법관의 **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(활동계획 사전 승인, 사후 평가 강화,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)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**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

-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'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(위원장 기조실장)'의 '심의 강화'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

-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**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** ⇨ 그 시행방안에 **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**

▶ 3 **['인사모 해소 방안'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]**

- '인사모'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

- 그러나, 행정처가 '모든 연구회는 **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'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** 있음

-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, **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**한다면 **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**할 수 있음

▶ ④ **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**

-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**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**, 아니면 **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**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

● **시행에 따른 특정 연구회 회원 감소**

-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**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**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

	현재 가입회원 수		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
국제거래법	221		165
국제인권법	**431**		**204**
기업법	214		158
노동법	**295**		**196**
도산법	**449**	⇨	**283**
민사집행법	**875**		**780**
언론법	140		92
의료법	291		203
조세법	257		209
지적재산권법	**374**		**209**
환경법	245		182

※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

● **부작용 검토**

-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**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** 배제할 수 없음 ⇨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**편중 현상 촉발**할 가능성

-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'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' 및 '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' 등과 **함께 시행될 경우** 법관들에게 **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**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,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함

▣ 3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

● [필요성] 전문분야연구회 **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** ⇨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,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

-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**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**하므로, **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**

-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**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**해짐 ⇨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**기계적·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**

● 예산증액을 위한 **예산당국 설득 방안**

-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**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,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**

-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**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** 있음

●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(약 6억 원)를 활용할 필요 있음

- 기존의 **헌법연구회**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**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** 있음

●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

- 현행 평가기준표(아래 '외부 활동 강화' 항목 참조)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,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

▣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

● **필요성**

-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**사법부 전체 차**

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

-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'자신들만의 동질감' 내지 '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**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' 등을 유발**하고 있음

● 시행방안

-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

- ① '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' 거나

- ② '사법부의 **예산지원을 받는 이상**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'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

- ③ 각급 **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**함으로써 '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'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(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)

● [기대효과]

-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,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,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

-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

-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**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**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'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, 자부심 내지 결속감' 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

-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⇨ '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'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

-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,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(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)

● 부작용 검토

-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

- 2015. 5.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,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'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'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

●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

-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

-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, 연구회장이 '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'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▣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

● 필요성

-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

-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

-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,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

● [시행방안 ①] '대형 이벤트' 발굴 및 지원

☑ 필요성

▶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**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**

▶ 해당 전문분야에서 **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**을 기획·실시할 필요 있음

☑ 시행방안

▶ 대형 이벤트

- 특별세미나 외에도 **모의재판, 국제회의(ex: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컨퍼런스), 경연대회 등**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

▶ 대형 출판사업

- **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**,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, **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** 등을 검토할 수 있음

▶ **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**

-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(1억 원)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**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**

- **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**(2012년 기조실 검토서의 '상시지원' 방안 유사 제도 도입,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, 시기 및 가용예산범위 등에 관하여 **별도 상세 검토 필요**)

▶ **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** 활용 방안

-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(약 1억 7천만 원)이 편성되고 있으므로, 전년도 또는 **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**도 가능(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,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)

● [시행방안 ②]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

-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
-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
-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

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기준		배점(100)
게시물 평가	토론장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		30
	세부기준	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	7
		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	7
		게시물의 완성도	8
		실무와의 관련성, 실무에 대한 기여도	8
회원 참여도	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,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		30
	세부기준	게시물의 수 (절대 숫자)	10
		글을 게시한 회원 수 / 전체 회원 수	10
		게시물에 대한 조회수	10
세미나	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, 성과 등에 대한 평가		20
	세부기준	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	8
		세미나 구성의 적절성	5
		세미나 성과물의 수준	7
기타 (사이트운영,예산등)	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,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,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		20
	세부기준	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,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	5
		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	5
		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	5
		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	5

● [시행방안 ③]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

- 매년 각 연구회별로 **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**를 1명씩 추천받아 **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**하는 방안 등(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)

- **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** 효과

● 단,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·검토 필요

▣ 6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

● 관련 규정 ⇨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, 설립허가 취소 가능,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

☑ **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**

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

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. ⇨ **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**

☑ **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**

제10조(커뮤니티의 폐쇄)

③ **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**에 운영자에게 **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**할 수 있다.

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**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**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**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**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의 권한)

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, 커뮤니티의 폐쇄,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,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・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,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☑ **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**

● **시행 타당성 검토 ⇨ 명분 약하고,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**

- **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** ⇨ 법관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+ **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**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(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)

-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⇨ 직권 폐쇄 가능하나,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**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**할 필요

-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⇨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,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(**행정처의 불통・권위적・관료적 이미지 악화,**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)

▣ 7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

●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'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'는 의견 있음

● **검토 의견 ⇨ 소극**

- **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**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,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**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**

- **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**에서 위험부담이 크고, **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**

- 행정처(결국 대법원장님, 처장님)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. [끝]